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4 선고 2019가단2300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채, 이나라
변 론 종 결 2022. 3. 30.
판 결 선 고 2022.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9. 3. 15. 접수 제886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5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3. 15. 접수 제1380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52,392,968원과 그 중 52,090,904원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3. 3.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13.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보증금액을 52,320,000원(그 후
49,92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을 2018. 12. 13.(그 후 2019. 12. 12.까지로 연장됨)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65,4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는 2019. 5. 7.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9. 11. 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에 52,090,90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2. C,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차전140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25.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92,968원과 그 중
52,090,904원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지급명령정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20.
3. 17. 확정되었다.

라. B은 2019. 3. 12. 피고와 협의이혼하였고, 2019. 3. 14. 피고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55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9. 3. 15. 접수 제8864호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5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3. 15. 접수 제13808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4, 5, 7, 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와 B은 1990. 6. 22.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2019. 3. 12. 협의이혼한 사실, 피고는 28년 이상 B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 두 명을 양육한 점, ② 피고와 B은 2015. 1.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2019. 3.경 시가는 1,120,000,000원인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6.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96,000,000원의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이, 2015. 6. 1. 채무자 B, 채권최고액 81,600,000원의 주식회사 D의 근저당권이, 2016. 9. 12. 채무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에도 존재하였고, 그 당시 주식회사 D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617,774,989원인 사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가 그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 역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한 점, 피고가 B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B의 1/2 지분의 가치는 주식회사 D의 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B은 2017. 6. 20.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55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2017. 7. 14.경 시가는 3,452,000,000원으로 그 중 B의 지분은 125,527,272원(=3,452,000,000원×2/55, 원 미만 버림)으로 평가되는 사실,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7. 7. 28.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이, 2017. 7. 28. 채무자 I,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2. 채무자 J, 채권최고액 700,000,000원(2017. 7. 6. 500,000,000원으로 변경됨)의 K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6.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F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6. 채무자 I, 채권최고액 203,500,000원의 F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에도 존재하였고, 그 당시 주식회사 E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1,266,427,000원이고, F 주식회사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315,000,000원인 사실, 그에 따라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2/55 지분의 실제 가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고려하여 때 5,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B의 대출금에 대하여 자신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는 또한 자녀들을 자신이 양육하기로 하였고, 자녀들의 생활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윤

별지